

「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9월 2일, 이창열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9월 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9월 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미래산업의 변화에 따라 드론산업도 발전할 것이므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 자체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(안 제6조)
-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노력(안 제7조)
-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욱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.

「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9. 2.
- 회부일자 : 2024. 9. 5.
- 상정일자 : 2024. 9. 5.

2. 제안이유

- 미래산업의 변화에 따라 드론산업도 발전할 것이므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 자체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(안 제6조)
-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노력(안 제7조)
-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‘지자체는 드론산업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5조(자체계획 수립)에서 부문별 추진전략, 자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
- 안 제6조(사업 등)에서 우리 군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< 드론산업 육성사업 >

1.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
2.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
3.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
4. 드론 사용 사업자 창업·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
5. 드론 관련 지역행사와 대회 지원
6.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
7.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
8.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안 제10조(재정지원)에서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신성장 동력사업인 드론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 및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활용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05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4년 9월 2일

발의자: 이창열 의원

찬성자: 남진삼, 심현정, 이은미 의원

1. 제안이유

-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중화 되어가고 있음.
- 미래산업의 변화에 따라 드론산업도 발전할 것이며,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자체계획 수립 (안 제5조)
- 사업 등 (안 제6조)
-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입법예고: 2024. 8. 6. ~ 2024. 8. 27.(21일간), 아래표 참조
-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4. 7. 17. ~ 2024. 7. 30.(14일간), 아래표 참조

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(경제과) 검토의견 제출

1. 조례명 변경

- 조례안(의회 안) : 평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검토안(경제과) :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
- 사유 : 군 실정에 맞도록 드론 활용 촉진(활성화)과 드론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일부 수정
- 의회의견 : 수용

2. 제1조(목적) 수정

- 조례안(의회 안) :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검토안(경제과) : 제1조(목적) --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-----.
- 사유 : 상동
- 의회의견 : 수용

3.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수정

- 조례안(의회 안) :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검토안(경제과) :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-----.
- 사유 : 상동
- 의회의견 : 수용

4. 제5조(기본계획 수립) 수정

- 조례안(의회 안)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
2.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
3.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
4. (생략)

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○ 검토안(경제과)

제5조(계획 수립) ① --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계획-----.

1. 기본목표 및 방향
2.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
3.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
4. (생략)

③ <삭제>

○ 사유 : 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되,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 실정에 맞게 드론 관련사업 추진 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

○ 의회의견 : 부분수용

- (약칭: 드론법)제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, 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.
-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거나, 군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상위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.
-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반드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님.
-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기본계획 규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,
- 현재 드론산업에 대한 기반마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군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부분수용해 자체계획으로 변경.

5. 제6조(사업 등)수정

○ 조례안(의회 안)

제6조(사업 등)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

1. ~ 8. (생략)

9.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(생략)

○ 검토안(경제과)

제6조(사업 등) ① ---- 1. ~ 8. (생략)

9. -----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-----

② (생략)

○ 의회의견 : 수용

6. 제7조(드론 활용사업의 확대) 추가

○ 조례안(의회 안)

제7조(드론체험 및 교육)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민에 대한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○ 검토안(경제과)

제7조(드론 활용사업의 확대)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·품질 등의 실적관리

2.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

3. 산불·재난·방재·방역 등의 재난·안전 업무

4. 지적측량,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

5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

6. 비료 또는 농약 살포,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

7.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

8.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사유 : 드론체험 및 교육 규정은 안 제6조제1항제6호(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·교육 및

체험프로그램의 제공)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,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시 드론활용 장려

○ **의회의견** : 수용, 부분수용

- 수용 :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(수용)

- 부분수용 : 제7조(드론체험 및 교육)규정 삭제는 미수용, 제6조제1항제6호 삭제 수용.

※ 제6조제1항제6호는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·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, 제7조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이 다르나, 집행부 의견을 부분수용하여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.

7. 제8조(실태조사) 삭제 및 제8조(사무의 위탁) 추가

○ **조례안(의회 안)**

제8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○ **검토안(경제과)**

제8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○ **사유** :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드론산업 실태조사)에 따르면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 등 각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, 드론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 마련

○ **의회의견** : 수용

-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군 실정에 맞는 드론산업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. (약칭: 드론법)의 근거로 정부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태조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, 자체적인 실태조사가 마련된 뒤,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에 부합한다고 사료.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의 의견 반영하여,

- 위탁규정 마련 수용.

제9조(사무의 위탁)을 추가함에 따라, 제6조제2항삭제 및 제10조(재정지원) 추가.

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자체계획 수립)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방향
2.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
3.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
4.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사업 등)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

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
2.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
3.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
4. 드론사용 사업자 창업·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
5. 드론 관련 지역 행사와 대회 지원
6.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
7.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
8.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드론 활용사업의 확대)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·품질 등의 실적관리
2.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
3. 산불, 재난, 방재, 방역 등의 재난·안전 업무
4. 지적측량,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
5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
6. 비료 또는 농약 살포,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및 가축 관리 업무
7.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
8.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드론체험 및 교육)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

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재정지원)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, 학계,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

제3조(드론산업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7.>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가. 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6조(사업 등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이서진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745 |